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 | |
|----------|-------|
| 의안 번호 | 19-28 |
|----------|-------|

2019. 4. 3.
전문위원 신준호

1. 제출경위

- 가. 제 출 자 : 마포구청장(도시경관과)
- 나. 제 출 일 : 2019. 3. 22.
- 다. 회 부 일 : 2019. 3. 25.

2. 제출이유

2016년 1월 6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 명칭 변경에 따른 조례 제명 및 용어 등을 반영하고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을 참고하여 디지털광고물인 전자게시대의 세부 관리기준을 정하는 등 현행 조례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제명 변경
- 나. 옥외광고물법 및 서울시 조례 현황에 맞는 용어 및 명칭 변경
 - 1)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를 '옥외광고심의위원회'로 변경
(안 제2조제1항7호, 안 제12조)
 - 2) '가로형 간판'을 '벽면 이용 간판'으로 변경(안 제5조)
 - 3) '옥외광고업'을 '옥외광고사업'으로 변경(안 제21조)

- 4) '안전점검', '안전도검사'를 '안전점검'으로 변경(안 제15조, 안 제16조)
- 다. 전자게시대 설치·관리 기준 및 표출비율, 기간, 신청방법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8조)
- 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상위법 근거조항 삭제에 따라 조례 제20조 옥외광고업의 등록 관리를 삭제하고, 제18조 및 제19조를 각각 제19조 및 제20조로 변경
- 마. 별표 내용 및 별지 서식 중 제명, 용어,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 1) 안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4, 별표 5, 별표 6
 - 2) 안 별지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11호, 제12호, 제13호, 제14호, 제15호 서식
- 바. 조례상 일부 미비점 보완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띄어쓰기 반영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타

- 1) 입법예고 : 2019. 2. 21.~ 3. 13.(의견 없음)
- 2) 행정규제 사전심사 : 해당사항 없음
- 3)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 4)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5. 검토의견

가. 조례 개정 배경

- 본 조례 일부 개정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가 개정·시행됨에 따라,
 - 옥외광고물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을 참고하여 마포구 실정에 맞게 조례의 제명과 조문을 개정하고,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순화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나. 제명 및 주요 조문 검토

1) 조례 명칭 변경

- 옥외광고산업 지원 강화를 위해 상위법령의 제명이 변경되어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에 예산 확보와 관련 정책 수립 등 책무를 명확히 하고 옥외광고사업자의 자율적 규제를 촉진하기 위한 것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조례와의 관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차원에서 타당하나 시의성은 다소 떨어짐.
- 참고로, 옥외광고물법¹⁾과 서울특별시 조례²⁾의 제명도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개정하였음.

2) 용어 변경

- 옥외광고물법 개정에 따라 법률 용어를 개정하여 구민이 쉽게 이해하고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4839호, 2017. 7.26.일부개정)

2)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6546호, 2017. 7.13.일부개정)

옥외광고물법과의 일원화를 이루기 위한 방법으로 타당함.

<표 1. 주요 용어 변경>

| 현행 | 개정 | 비고 |
|----------------|------------------------|--------------------|
|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 | 옥외광고심의위원회 | 안 제2조 |
| 가로형 간판, 세로형 간판 | 벽면 이용 간판 ³⁾ | 안 제5조 |
| 옥외광고업 | 옥외광고사업 | 안 제21조, 제22조, 제23조 |
| 안점점검, 안전도검사 | 안전점검 | 안 제15조, 제16조 |

3) 전자게시대 표출관리 조항 신설(안 제18조)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16년 1월 6일 개정⁴⁾되면서 구청장은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광고를 표시하거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소상공인·전통시장 등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를 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상업지역 등에 전자게시대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이를 반영하고자 세부 설치기준은 서울시 조례를 따르고, 표출관리방법은 행정안전부 표준안을 준용하였음.

<표 2. 전자게시대 설치 예시>



3) “벽면 이용 간판”이란 문자·도형 등을 목재·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을 이용하여 판이나 입체형으로 제작·설치하여 건물·시설물·점포·영업소 등의 벽면, 유리벽의 바깥쪽, 옥상난간 등에 길게 붙이거나 표시하는 것을 말함(영 제3조제1호 가목). 건물 등의 벽면에 부착하는 옥외광고물의 모양·형태 등이 다양해짐에 따라 종전에는 ‘가로형 간판’ 또는 ‘세로형 간판’으로 분류하던 옥외광고물이 ‘벽면 이용 간판’으로 일원화되었음.

4) 제16조(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등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제29조제2항 각 호의 법인(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이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광고를 표시하도록 하거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소상공인·전통시장 등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를 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디지털광고물인 지주 이용 간판(이하 “전자게시대”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6.7.6]

4) 광고물 등의 표시 허가 및 신고수수료 신설(안 제23조제1항제1호 별표2)

- 허가 및 신고 수수료 항목은 옥외광고물법 제17조⁵⁾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에서 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부과해야 하는 것으로서 옥외광고물법에서 허가 및 신고 대상 광고물을 별도로 열거하고 있으므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이나, 수수료 항목을 추가하는 것은 주민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이므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표 3. 자치구 입간판 신고 수수료 계상 현황>

| 구분 | 수수료 4,000원 | 수수료 5,000원 | 조례 근거 없음 | 비고 |
|------|---|------------|---|----|
| 자치구명 | 강남구, 강동구, 관악구, 구로구, 서대문구, 서초구, 성동구, 송파구, 은평구, 중구, 중랑구 | 종로구 | 강북구, 강서구, 광진구, 금천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동작구, 성북구, 양천구, 영등포구, 용산구 | |

5) 옥외광고업의 등록관리 조항 삭제(안 제20조)

- 옥외광고업의 등록관리 조항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옥외광고사업의 등록과 관련한 규제 완화와 옥외광고사업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차원으로 폐지되어 상위법에 근거한 조문 삭제는 타당하고 판단됨.

6) 기타 조문

- 이 밖에 다른 개정 조항 및 별표 내용과 별지 서식의 변경은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행정안전부 표준안을 준용하였음.

5) 제17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군·자치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시·도(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1.6] [[시행일 2016.7.7]]

1. 제3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